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Article **02**



지 배 현
소방방재청
방재대책팀 시설주사

지난 1월 3일「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및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의 근거 마련(시행령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 폭풍해일·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해일에 대한 조사·연구, 해일피해경감계획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학적인 해일대책 추진 곤란.

□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 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직권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요건 등의 관한 시행기준 마련(시행령 제32조의2 신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업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등 각종 방재안전대책업무를 대

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등록요건 정함.

- 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방재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절차 등을 정함(시행령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 자연재해 피해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복구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피해 원인의 분석 및 기술검토가 미흡하므로 국가차원의 지도·지원 대책이 필요함.
-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인력 수급 여건, 기술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지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복구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제도관련 조문 발췌

지난 2007. 1. 3일자로 개정·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제도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제도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조문

법 제2조(정의)

- 1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라 함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법 제38(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4.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 ②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행자 등록요건에 대하여 이번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관련조문은 다음과 같다.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를 등록하거나 구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업무는 지진부문과 풍수해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업무
3.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4.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3조)

부칙 제3조(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나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별표3]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32조의2제2항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

동주체 신고인

-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
-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교부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 1인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에 한하여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대행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수인력 및 분야별 기술인력으로 서로 다른 종목의 기술사 또는 이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일 종목의 기사 또는 이에 해당

되는 전문인력을 2개의 업무 분야까지 중복시켜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2~3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중 1인 이상	- 토질 및 기초공학 - 수자원 공학
	2.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전공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공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 기술사 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비 고 : 지진부분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수자원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3인 이상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 토목 시공학 - 토목구조 공학 - 도로 및 교통공학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업토목 공학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3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질 및 지반공학 - 산림공학 - 토목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도시 계획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토목공학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3인 이상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도시 계획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도시 계획학

(다)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인원수	기 술 인 력	전공분야
3인 이상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공항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토목 시공학 - 토목 구조공학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3인 이상	농어업토목기술사·산림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도로 및 교통공학 - 상·하수 도공학 - 건설안전공학 - 농업토목공학 - 산림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토목공학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부문)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4인 이상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해안항만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 건설안전공학 - 농업토목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건설안전기사·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토목공학 - 건축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 도시계획학

(마)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부문)

인원수	기술인력	전공분야
4인 이상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도로및공항기술사·항만및해안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철도기술사·가스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토목구조공학 - 건축구조공학 - 도로 및 교통공학 - 해안항만공학 - 전기공학 - 철도공학 - 가스공학 - 건설안전공학 - 정보통신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보선기사·전기기사·가스기사·정보통신기사·건설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 토목공학 - 건축공학 - 철도공학 - 전기공학 - 가스공학 - 정보통신공학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제도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확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대행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행자를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 우려되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방재

전문인력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대행하고자 희망하는 대행자(용역기관)는 서둘러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행자 등록을 완료해야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